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6. 2. 9.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5호
----------	------

제출연월일 : 2026. 2. 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논산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나. 품질자문단 위원의 임기 및 제척,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다. 품질자문단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라. 품질자문 대상과 자문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마. 자문결과의 제출, 회의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 바. 품질자문단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사. 품질자문단의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기획감사실-12642(2025.11.14.)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복지정책과-35789(2025.11.19.)호]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12830(2025.11.14.)호]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11. 11. ~ 12. 1. (20일 이상)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충청남도 건축디자인과

□ 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시공 등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논산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이하 “품질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품질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건축의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현장 품질자문
2. 공공건축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품질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관련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축 품질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직원을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건축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9. 그 밖에 품질자문단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시공사 또는 감리자(이하 “시공사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시공사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발주자 등 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공사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시공사 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품질자문단을 대표하고, 품질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자문대상) 품질자문단은 논산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건축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2. 그 밖에 시장이 품질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방법) ①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자문단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건축의 품질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품질자문단이 품질자문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해당 공사이행당사자(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일시, 자문내용 및 품질자문단 구성 등이 포함된 자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자문결과의 제출) 품질자문단은 품질자문을 실시한 후 자문 종료
일부터 5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제11조(회의) ①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
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품질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감염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
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품질자문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공무원 및 전문가·건축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
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자문단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품질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용 정
안	공 공 건 축 팀 장	김 영 일
자	담 당 자	백 동 기 (746-6498)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 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 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김 용 정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